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부위원회
1994. 10. 17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1994년 10월 6일

회부일자 : 1994년 10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7 회 임시회

제 3 차 내부위원회 (1994. 10. 17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소방본부장 이 용 태)

가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편성권자 변경(도지사 → 소방서장, 군수)에 따라 자녀장학금 예산 편성자를 이에 알맞게 조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장학금 예산편성권자 조정(제7조)

- 현행 도예산에서 편성 → 임용권자 소속기관(도,군)에서 편성

-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정(제10조)

- 현행 도에 설치 → 임용권자 소속기관 (도,군에 설치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우병수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현행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권은 도지사에 있었으나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와 관련한

- 예산편성권자가 소방서장,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녀에게
지급되고 있는 자녀장학금의 예산편성권자도 이와 같도록 하기 위하여
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에 관련하여 도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

을 임용소속 기관의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에
관한 조문 또한 이에 부합되도록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원안대로 의결(참석6인, 찬성 6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.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증 개정조례(안)

. 신구조문대비표